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인상 삭감 효과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06. 21.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i
1. 서론	1
2.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수집	2
2) 분석 방법	4
3. 분석결과	
1) 최저임금 15%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실제 임금인상률은 8.6%	5
2) 최저임금 10%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실제 임금 인상률은 4.4%	7
3) 최저임금 7%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실제 임금 인상률은 2.5%	8
4. 요약 및 결론	9
〈부표〉	13

요약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만을 산입했는데, 2019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산입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된다.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매우 드물다. 이는 법 시행이 2019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과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등 임금 항목별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하게 개별 노동자의 임금 항목별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 역시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본 보고서는 민주노총 저임금 조합원의 임금명세서 취합과 설문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 실제 임금인상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초과노동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150% 이하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5월 1일~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조합원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직접 받거나, 설문조사서에 응답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임금명세서 포함)에는 81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지만, 그중 본 보고서의 목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인상 삭감 효과 분석에 부합하는 사례는 35명이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금년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내년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시급 10,028원)되더라도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 산입범위인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13%인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8.6%로 떨어졌다. 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률 삭감 효과는 4.3%p로 추정됐다.

[표-1]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률과 인상액 변화

(단위: %, %p, 원)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임금인상률			2022년 임금인상액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	실제 인상률	인상률 격차	기존 산입범위 인상액	실제 인상액	인상액 격차
15	13.0	8.6	-4.3	245,770	162,710	-83,054
10	8.9	4.4	-4.5	168,910	82,730	-86,177
7	6.8	2.5	-4.3	129,900	47,310	-82,586

주 1) 최저임금 인상액은 1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

2) '실제 인상률'과 '실제 인상액'은 '현행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인상률과 임금인상액을 말함

2)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7%, 10%, 15% 인상 시, 각각의 경우에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대상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0%(시급 9,592원)와 7%(시급 9,330원)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전 방식인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계산하면 각각 8.9%, 6.8%인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각각 4.4%, 2.5%로 떨어졌다.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인상률 삭감 효과는 각각 4.5%p, 4.3%p로 나타났다.

둘째,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때,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월 임금인상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45,770원인데, 복리후생비 및 월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162,710원으로 나타났다. 약 83,050원의 인상액 삭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0%와 7%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액은 각각 168,910원, 129,900원인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현행 산입범위로 계산한 실제 인상액은 각각 82,730원, 47,31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임금인상액은 각각 86,180원, 82,590원 삭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셋째, 복리후생비는 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지급받고 있었으며, 2022년도에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중은 60% 초반대, 금액으로는 약 7.2만 원~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는 모든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복리후생비의 임금인상 삭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2]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복리후생비 규모와 산입액

(단위: 원,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표본 수	복리후생비	산입액	산입비중
15%	35	116,181	75,831	61.0
10%	32	116,448	77,993	62.5
7%	25	109,853	72,109	60.6

주 1) 복리후생비 규모는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하다고 가정

2) 산입액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3) 산입비중 = (산입액 ÷ 복리후생비) × 100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수당이 2020년 8월 현재 전 산업 평균 약 109,880원이다. 이는 본 보고서 분석 대상자의 복리후생비 수준(109,850원 ~ 116,180원)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민주노총 저임금 조합원 실태가 전체 노동자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규모(35명)는 양적으로 충분치 않지만,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임금 항목과 항목별 임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실제 인상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저임금과 임금 불평등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 효과가 앞으로 누적적으로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다뤄져야 한다.

1. 서론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산입범위가 확대됐으며, 2019년부터 적용됐다. 기존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만을 산입했지만, 2019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일정 비율씩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표-3]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자료: 고용노동부(2019),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실제 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매우 드물다. 이는 법 시행이 2019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과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등 임금 항목별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하게 개별 노동자의 임금 항목별 정보를 제공하지만,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 항목을 통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이정아(2021)와 이창근(2018)의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정아(2021)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과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평균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2021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2024년까지 유지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6.0%+물가상승률’ 수준”이 되어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시작된 2019년 수준을 고려한다면 2024년까지 매년 ‘7.6%+물가상승률’이 필요하며, “산입범위 확대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2019년 수준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8.9%+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평균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체계’는 ‘상여금 4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 기본급은 2018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정된 임금노동자’를 말한다. 다만 ‘평균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영향을

분석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와 직접적으로 연동돼 임금이 인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의 구체적인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이창근(2018)은 최저임금 1.2배 이하 민주노총 조합원 6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개약 최저임금법,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다고 가정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개약된 산입범위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는 8.6% 인상되지만 새로운 산입범위 기준으로는 5.7%p나 대폭 떨어진 2.9% 인상에 그친다고 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93,400원의 임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정기상여금 수령자의 경우 실제 사례는 적지만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산입범위로는 임금이 13.4% 인상되지만, 확대된 산입범위 기준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0.7% 인상에 그치고 만다. 한편 위 분석 보고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민주노총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시행한 저임금 노동자 실제 임금명세서 취합과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문의 분석 대상 규모(35명)는 양적으로 충분치 않지만,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임금 항목과 항목별 임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수집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와 취합된 임금명세서를 활용하였다. 초과노동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150%(월 환산액 2,733,720원, 주 40시간 기준) 이하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임금명세서 취합과 설문조사는 2021년 5월 1일~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조합원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직접 받거나, 설문조사서에 응답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임금명세서 포함)에는 81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중 본 보고서의 목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인상 삭감 효과 분석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35명이었다.

분석 대상자인 35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업 8명, 사업관리·지원 서비스업 23명, 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 1명, 교육업 2명, 제조업 1명 등으로 사업관리·지원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비중이 매우 높다. 직군별로는 서비스 판매직(31명) 비중이 절대적이며, 그 외 생산직(3명)과 전문직(1명)이 포함되어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다. 35명의 분석 대상자에 대한 기초 통계는 아래와 같다([표-4] 참조).

[표-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세부 내용	응답자 수
업종	보건·복지업	8
	사업관리·지원 서비스업	23
	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	1
	교육업	2
	제조업	1
직군	서비스 판매직	31
	생산직	3
	전문직	1
성별	여성	27
	남성	8
연령	30대 이하	3
	40대	4
	50대	7
	60대 이상	21
전체		35

월 평균 임금총액(초과노동수당 제외)은 2,018,410원, 기본급은 1,729,050원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이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던 직책·직무수당 등 통상수당은 평균 42,680원이었으며, 분석 대상자 35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3명만 지급받고 있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되기 시작한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분석 대상자 전원이 지급받고 있었다. 복리후생비는 평균 116,180원이었다. 한편 분석 대상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단위 정기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는 3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다만, 추석, 설 등 명절 상여금은 대다수가 받고 있었다.

[표-5] 월 임금 총액과 임금 구성 현황(2021년 3월 ~ 5월 기준) (단위: 원, 시간)

구분	임금총액	기본급	통상수당	정기(월)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상여금수당	소정 노동시간(월)
금액/시간	2,018,407	1,729,047	42,676	13,211	116,181	117,292	201

- 주 1) 임금총액은 초과노동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제외한 임금 합계
 2) 통상수당은 직무·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기존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던 임금
 3) 기타 상여금은 월 단위가 아닌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을 말하며, 최저임금 미산입 상여금
 4) 기타 수당은 통상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종 수당을 말하며, 최저임금 미산입 수당(임금)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2) 분석방법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 도구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분석 대상 노동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최저임금 영향률’ 개념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금년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내년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노동자 수 비율”로 정의한다. 이 개념을 이용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영향률에 속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둘째,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금액만큼만 인상된다고 가정한다. 즉, 내년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만 인상된다고 가정한다.

셋째,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복리후생비, 월 정기상여금 등 확대된 산입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정 비율씩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을

우선 포함하고, 그 이후 부족한 금액을 기본급 및 통상수당 등 기존부터 산입되고 있었던 임금 항목으로 나머지를 충족시킨다는 가정이다.

넷째,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 임금에 미친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임금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기존 산입 범위(기본급과 통상수당)와 새롭게 추가된 산입범위(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중심으로 개별 임금항목은 어떻게 조정되며, 임금총액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따라서 산입범위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초과노동수당, 명절 상여금, 기타수당 등 과거에도 현재에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섯째,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연도별로 다르다.

여섯째,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하 본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 10%, 7% 등 세 가지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즉, 각 인상률에 따라 내년도에 임금인상이 필요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가 기존 산입범위로 계산했을 때의 인상률·인상액과 현행 산입범위로 계산했을 때의 인상률·인상액을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3. 분석결과

1) 최저임금 15%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실제 임금인상률은 8.6%

2022년 최저임금이 15% 인상(시급 10,028원)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실제 임금인상률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기본급과 통상수당만이 포함되었던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로는 임금이 평균 13.0% 인상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산입범위와 산입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임금인상률은 8.6%로 떨어진다([표-6] 참조).

임금인상액도 최저임금법 개정 전보다 감소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기존

산입범위에 따른 인상액은 월 245,770원인데, 현행 산입범위로는 인상액이 월 162,710원으로 하락해, 월 평균 83,050원 감소한다.

[표-6] 2022년 최저임금 15% 인상 시, 시간당임금계층별 월 평균 삭감률과 삭감액(단위: 명, %, %p, 원)

시간당 통상임금	표본 수	최저임금 인상률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A)	현행 산입범위 인상률(B)	삭감 인상률(B-A)	삭감액
9,000원 미만	10	15	16.1	12.4	-3.7	-74,527
9,000원 이상~9,300원 미만	15	15	13.1	8.7	-4.5	-82,648
9,300원 이상~10,028원 이하	10	15	9.6	4.8	-4.8	-92,189
전체	35	15	13.0	8.6	-4.3	-83,054

주 1) 기존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2) 현행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 (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1)

3)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15% 인상(시급 10,028원) 시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 대상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의 실제 인상률이 삭감되는 주요 이유는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가 산입되고, 내년에 산입되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들이 받는 복리후생비 전체 평균은 116,180원인데, 그중 2022년 최저임금 15% 인상 시 산입되는 금액은 75,830원으로 전체 복리후생비 대비 61%로 나타났다. 임금계층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9,000원 미만 노동자는 복리후생비 중 약 48%(49,250원), 9,000원 이상 ~ 9,300원 미만 노동자는 약 64%(82,650원), 9,300원 이상 ~ 10,028원 이하 노동자는 69%(92,190원)가 산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아래 [표-7] 참조).

[표-7] 2022년 최저임금 15% 인상 시, 시간당임금계층별 복리후생비 규모와 산입액(단위: 명, 원, %)

시간당 통상임금	표본 수	복리후생비	산입액	산입비중
9,000원 미만	10	90,632	49,246	47.7
9,000원 이상 ~ 9,300원 미만	15	122,667	82,648	64.4
9,300원 이상 ~ 10,028원 이하	10	132,000	92,189	69.1
전체	35	116,181	75,831	61.0

주 1) 복리후생비 규모는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하다고 가정

2) 산입액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10,028원×월 소정노동시간) × 0.02

3) 산입비중 = (산입액 ÷ 복리후생비) × 100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2) 최저임금 10%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실제 임금 인상률은 4.4%

2022년 최저임금이 10% 인상(시급 9,592원)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는 산업범위 확대에 의해 실제 임금인상률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기본급과 통상수당만이 포함되었던 기존 최저임금 산업범위로는 임금이 평균 8.9% 인상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산업범위와 산업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임금인상률은 4.4%로 떨어진다([표-8] 참조).

임금인상액도 최저임금법 개정 전보다 감소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기존 산업범위에 따른 인상액은 월 168,910원인데, 현행 산업범위로는 인상액이 월 82,730원으로 하락해, 월 평균 86,180원 감소한다.

[표-8] 2022년 최저임금 10% 인상 시, 시간당임금계층별 월 평균 삭감률과 삭감액(단위: 명, %, %p, 원)

시간당 통상임금	표본 수	최저임금 인상률	기존 산업범위 인상률(A)	현행 산업범위 인상률(B)	삭감 인상률(B-A)	삭감액
9,000원 미만	10	10	11.3	7.5	-3.8	-77,237
9,000원 이상~9,300원 미만	15	10	8.5	3.9	-4.6	-84,388
9,300원 이상~9,592원 이하	7	10	6.4	0.9	-5.5	-102,783
전체	32	10	8.9	4.4	-4.5	-86,177

주 1) 기존 산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2) 현행 산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 (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1)

3)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10% 인상(시급 9,592원) 시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 대상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2022년 최저임금 10%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의 실제 인상률이 삭감되는 주요 이유는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가 산입되고, 내년에 산입되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들이 받는 복리후생비 전체 평균은 116,450원인데, 그중 2022년 최저임금 10% 인상 시 산입되는 금액은 77,990원으로 전체 복리후생비 대비 62.5%로 조사됐다. 임금계층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9,000원 미만 노동자는 복리후생비 중 절반가량(51,050원), 9,000원 이상 ~ 9,300원 미만 노동자는 66%(84,390원), 9,300원 이상 ~ 9,592원 이하 노동자는 73%(102,780원)가 산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9] 참조).

[표-9] 2022년 최저임금 10% 인상 시, 시간당임금계층별 복리후생비 규모와 산입액(단위: 명, 원, %)

시간당 통상임금	표본 수	복리후생비	산입액	산입비중
9,000원 미만	10	90,632	51,046	49.9
9,000원 이상 ~ 9,300원 미만	15	122,667	84,388	65.9
9,300원 이상 ~ 9,592원 이하	7	140,000	102,783	73.1
전체	32	116,448	77,993	62.5

주 1) 복리후생비 규모는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하다고 가정
 2) 산입액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9,592원×월 소정노동시간) × 0.02
 3) 산입비중 = (산입액 ÷ 복리후생비) × 100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3) 최저임금 7%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실제 임금 인상률은 2.5%

2022년 최저임금이 7% 인상(시급 9,330원)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실제 임금인상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이 7% 인상되면 기본급과 통상수당만이 포함되었던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로는 임금이 평균 6.8% 인상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산입범위와 산입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임금인상률은 2.5%로 떨어진다 ([표-10] 참조).

임금인상액도 최저임금법 개정 전보다 감소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7% 인상될 경우 기존 산입범위에 따른 인상액은 월 129,900원인데, 현행 산입범위로는 인상액이 월 47,310원으로 하락해, 월 평균 82,590원 감소한다.

[표-10] 2022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시간당임금계층별 월 평균 삭감률과 삭감액(단위: 명, %, %p, 원)

시간당 통상임금	표본 수	최저임금 인상률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A)	현행 산입범위 인상률(B)	삭감 인상률(B-A)	삭감액
9,000원 미만	10	7	8.5	4.6	-3.9	-78,317
9,000원 이상 ~ 9,330원 이하	15	7	5.7	1.1	-4.6	-85,432
전체	25	7	6.8	2.5	-4.3	-82,586

주 1) 기존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2) 현행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 (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1)
 3)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7% 인상(시급 9,330원) 시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 대상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2022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시급 9,330원 이하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의 실제 인상이 삭감되는 주요 이유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그 비중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급 9,330원 이하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들이 받는 복리후생비 전체 평균은 109,850원인데, 그중 2022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산입되는 금액은 72,110원으로 전체 복리후생비 대비 약 61%로 조사됐다. 임금계층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9,000원 미만 노동자는 복리후생비 중 약 51%(52,130원), 9,000원 이상 ~ 9,330원 이하 노동자는 약 67%(85,430원)가 산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11] 참조).

[표-11] 2022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시간당임금계층별 복리후생비 규모와 산입액(단위: 명, 원, %)

시간당 통상임금	표본 수	복리후생비	산입액	산입비중
9,000원 미만	10	90,632	52,125	51.3
9,000원 이상 ~ 9,330원 이하	15	122,667	85,432	66.9
전체	25	109,853	72,109	60.6

주 1) 복리후생비 규모는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하다고 가정

2) 산입액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9,330원×월 소정노동시간) × 0.02

3) 산입비중 = (산입액 ÷ 복리후생비) × 100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4. 요약 및 결론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만을 산입했는데, 2019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산입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된다.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매우 드물다. 이는 법 시행이 2019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과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등 임금 항목별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하게 개별 노동자의 임금 항목별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 역시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본 보고서는 민주노총 저임금 조합원의 임금명세서 취합과 설문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 실제 임금인상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초과노동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150% 이하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5월 1일~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조합원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직접 받거나, 설문조사서에 응답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임금명세서 포함)에는 81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지만, 그중 본 보고서의 목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인상 삭감 효과 분석에 부합하는 사례는 35명이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금년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내년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시급 10,028원)되더라도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 산입범위인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13%인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8.6%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률 삭감 효과는 4.3%p로 추정됐다.

[표-12]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율과 인상액 변화

(단위: %, %p, 원)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임금인상률			2022년 임금인상액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	실제 인상률	인상률 격차	기존 산입범위 인상액	실제 인상액	인상액 격차
15	13.0	8.6	-4.3	245,770	162,710	-83,054
10	8.9	4.4	-4.5	168,910	82,730	-86,177
7	6.8	2.5	-4.3	129,900	47,310	-82,586

- 주 1) 최저임금 인상액은 1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
- 2) ‘실제 인상률’과 ‘실제 인상액’은 ‘현행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인상률과 임금인상액을 말함
- 2)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 4) 최저임금 7%, 10%, 15% 인상 시, 각각의 경우에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대상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0%(시급 9,592원)와 7%(시급 9,330원)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전 방식인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계산하면 각각 8.9%, 6.8%인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각각 4.4%, 2.5%로 떨어졌다.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인상률 삭감 효과는 각각 4.5%p, 4.3%p로 나타났다.

둘째,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때,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월 임금인상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45,770원인데, 복리후생비 및 월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162,710원으로 나타났다. 약 83,050원의 인상액 삭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0%와 7%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액은 각각 168,910원, 129,900원인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현행 산입범위로 계산한 실제 인상액은 각각 82,730원, 47,31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임금인상액은 각각 86,180원, 82,590원 삭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셋째, 복리후생비는 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지급받고 있었으며, 2022년도에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중은 60% 초반대, 금액으로는 약 7.2만 원~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는 모든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복리후생비의 임금인상 삭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13]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복리후생비 규모와 산입액

(단위: 원,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표본 수	복리후생비	산입액	산입비중
15%	35	116,181	75,831	61.0
10%	32	116,448	77,993	62.5
7%	25	109,853	72,109	60.6

주 1) 복리후생비 규모는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하다고 가정

2) 산입액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3) 산입비중 = (산입액 ÷ 복리후생비) × 100

자료: 민주노동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수당이 2020년 8월 현재 전 산업 평균 약 109,880원이다. 이는 본 보고서 분석 대상자의 복리후생비 수준(109,850원 ~ 116,180원)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민주노동 저임금 조합원 실태가 전체 노동자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규모(35명)는 양적으로 충분치 않지만,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임금 항목과 항목별 임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실제 인상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저임금과 임금 불평등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 효과가 앞으로 누적적으로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다뤄져야 한다.

<부표-1> 2022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시급 9330원 이하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 인상률과 삭감 인상액

(단위: 원, %)

	2021년 임금총액 및 임금항목별 금액									2022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임금인상 삭감 인상률과 삭감 인상액			
	임금총액	최저임금 산입임금	기본급	통상 수당	정기(월)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상여금/수당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A)	현행 산입범위 인상률(B)	삭감 인상률 (B-A)	삭감 인상액
					전체	산입액	전체	산입액					
1	1,863,130	1,775,126	1,739,800	35,000	0	0	55,000	326	33,330	9.6	8.7	-0.9	-15,999
2	1,882,410	1,827,736	1,789,800	0	0	0	92,610	37,936	0	8.5	5.7	-2.8	-53,609
3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6.7	5.1	-1.6	-30,999
4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6.7	5.1	-1.6	-30,999
5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6.7	5.1	-1.6	-30,999
6	1,904,980	1,842,480	1,822,480	20,000	0	0	50,000	0	12,500	5.7	5.1	-0.6	-10,999
8	2,309,421	1,842,644	1,387,310	140,990	462,390	189,018	180,000	125,326	138,731	19.4	0.9	-18.6	-402,916
9	2,850,185	1,856,516	1,320,390	462,090	0	0	128,710	74,036	938,995	8.8	4.1	-4.7	-89,709
10	1,929,000	1,874,326	1,829,000	0	0	0	100,000	45,326	0	6.3	3.1	-3.2	-60,999
11	1,712,430	1,638,018	1,595,760	0	0	0	90,000	42,258	26,670	6.3	3.0	-3.3	-55,944
12	1,967,480	1,887,806	1,822,480	50,000	0	0	70,000	15,326	25,000	4.0	2.4	-1.6	-30,999
13	2,019,980	1,897,806	1,822,480	0	0	0	130,000	75,326	67,500	6.5	1.9	-4.7	-90,999
14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6.2	1.6	-4.6	-90,999
15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6.2	1.6	-4.6	-90,999
16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6.2	1.6	-4.6	-90,999
17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6.2	1.6	-4.6	-90,999
19	2,029,147	1,907,806	1,822,480	0	0	0	140,000	85,326	66,667	6.5	1.4	-5.1	-100,999
20	2,029,147	1,907,806	1,822,480	0	0	0	140,000	85,326	66,667	6.5	1.4	-5.1	-100,999
21	2,034,667	1,913,326	1,828,000	0	0	0	140,000	85,326	66,667	6.2	1.1	-5.1	-100,999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인상 삭감 효과

22	1,979,147	1,922,480	1,822,480	100,000	0	0	50,000	0	6667	1.4	0.8	-0.6	-10,999
23	1,735,217	1,593,293	1,508,550	0	0	0	130,000	84,743	96,667	6.4	0.5	-6.0	-97,717
24	1,735,227	1,593,303	1,508,560	0	0	0	130,000	84,743	96,667	6.4	0.5	-6.0	-97,717
25	1,715,135	1,602,950	1,518,468	0	0	0	130,000	84,482	66,667	6.4	0.5	-5.9	-97,530
26	1,715,135	1,602,950	1,518,468	0	0	0	130,000	84,482	66,667	6.4	0.5	-5.9	-97,530
27	2,063,107	1,941,766	1,866,440	0	0	0	130,000	75,326	66,667	4.2	-0.4	-4.6	-90,999
평균	1,978,329	1,822,147	1,724,948	32,323	18,496	7,561	109,853	57,316	92,709	6.8	2.5	-4.3	-82,586

주 1) 기존 산입범위 및 현행 산입범위 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에서 기타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2) 기존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3) 현행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 (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1)

3)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7% 인상 시,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 대상

5) 삭감 인상률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인상률과 현행 산입범위 기준 임금인상률 간 격차를 의미함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부표-2> 2022년 최저임금 10% 인상 시, 시급 9,592원 이하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 인상률과 삭감 인상액

(단위: 원, %)

	2021년 임금총액 및 임금항목별 금액									2022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임금인상 삭감 인상률과 삭감 인상액			
	임금총액	최저임금 산입임금	기본급	통상 수당	정기(월)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상여금/수당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A)	현행 산입범위 인상률(B)	삭감 인상률 (B-A)	삭감 인상액
					전체	산입액	전체	산입액					
1	1,863,130	1,775,126	1,739,800	35,000	0	0	55,000	326	33,330	12.6	11.8	-0.8	-14,905
2	1,882,410	1,827,736	1,789,800	0	0	0	92,610	37,936	0	11.4	8.6	-2.8	-52,515
3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9.6	8.0	-1.6	-29,905
4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9.6	8.0	-1.6	-29,905
5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9.6	8.0	-1.6	-29,905
6	1,904,980	1,842,480	1,822,480	20,000	0	0	50,000	0	12,500	8.6	8.0	-0.5	-9,905
7	2,309,421	1,842,644	1,387,310	140,990	462,390	189,018	180,000	125,326	138,731	21.9	3.4	-18.5	-401,823
8	2,850,185	1,856,516	1,320,390	462,090	0	0	128,710	74,036	938,995	11.6	7.0	-4.6	-88,615
9	1,929,000	1,874,326	1,829,000	0	0	0	100,000	45,326	0	9.1	6.0	-3.1	-59,905
10	1,712,430	1,638,018	1,595,760	0	0	0	90,000	42,258	26,670	9.2	5.9	-3.3	-54,989
11	1,967,480	1,887,806	1,822,480	50,000	0	0	70,000	15,326	25,000	6.8	5.3	-1.5	-29,905
12	2,019,980	1,897,806	1,822,480	0	0	0	130,000	75,326	67,500	9.3	4.7	-4.6	-89,905
13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9.0	4.4	-4.6	-89,905
14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9.0	4.4	-4.6	-89,905
15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9.0	4.4	-4.6	-89,905
16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9.0	4.4	-4.6	-89,905
17	2,029,147	1,907,806	1,822,480	0	0	0	140,000	85,326	66,667	9.3	4.2	-5.1	-99,905
18	2,029,147	1,907,806	1,822,480	0	0	0	140,000	85,326	66,667	9.3	4.2	-5.1	-99,905
19	2,034,667	1,913,326	1,828,000	0	0	0	140,000	85,326	66,667	9.0	3.9	-5.1	-99,905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인상 삭감 효과

20	1,979,147	1,922,480	1,822,480	100,000	0	0	50,000	0	6667	4.2	3.7	-0.5	-9,905
21	1,735,217	1,593,293	1,508,550	0	0	0	130,000	84,743	96,667	9.2	3.3	-5.9	-96,812
22	1,735,227	1,593,303	1,508,560	0	0	0	130,000	84,743	96,667	9.2	3.3	-5.9	-96,812
23	1,715,135	1,602,950	1,518,468	0	0	0	130,000	84,482	66,667	9.1	3.3	-5.9	-96,620
24	1,715,135	1,602,950	1,518,468	0	0	0	130,000	84,482	66,667	9.1	3.3	-5.9	-96,620
25	2,063,107	1,941,766	1,866,440	0	0	0	130,000	75,326	66,667	6.9	2.4	-4.5	-89,905
26	1,775,135	1,632,950	1,518,468	30,000	0	0	130,000	84,482	96,667	7.2	1.4	-5.8	-96,620
27	1,775,135	1,632,950	1,518,468	30,000	0	0	130,000	84,482	96,667	7.2	1.4	-5.8	-96,620
28	1,775,135	1,632,950	1,518,468	30,000	0	0	130,000	84,482	96,667	7.2	1.4	-5.8	-96,620
29	2,595,680	1,968,556	1,477,350	385,880	0	0	160,000	105,326	572,450	7.0	1.1	-5.9	-119,905
30	2,127,708	1,973,034	1,827,708	70,000	0	0	130,000	75,326	100,000	5.3	0.8	-4.4	-89,905
31	2,032,170	1,977,496	1,822,480	89,690	0	0	120,000	65,326	0	4.6	0.6	-3.9	-79,905
32	2,668,849	1,997,806	1,822,480	50,000	0	0	180,000	125,326	616,369	6.4	-0.4	-6.8	-139,905
평균	2,006,501	1,824,044	1,707,160	46,677	14,450	5,907	116,448	64,301	121,767	8.9	4.4	-4.5	-86,177

주 1) 기존 산입범위 및 현행 산입범위 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에서 기타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2) 기존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3) 현행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 (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1)

3)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10% 인상 시,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 대상

5) 삭감 인상률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인상률과 현행 산입범위 기준 임금인상률 간 격차를 의미함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부표-3〉 2022년 최저임금 15% 인상 시, 시급 10,028원 이하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 인상률과 삭감 인상액

(단위: 원, %)

	2021년 임금총액 및 임금항목별 금액									2022년 최저임금 7% 인상 시 임금인상 삭감 인상률과 삭감 인상액			
	임금총액	최저임금 산입임금	기본급	통상 수당	정기(월)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상여금/수당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A)	현행 산입범위 인상률(B)	삭감 인상률 (B-A)	삭감 인상액
					전체	산입액	전체	산입액					
1	1,863,130	1,775,126	1,739,800	35,000	0	0	55,000	326	33,330	17.5	16.8	-0.7	-13,083
2	1,882,410	1,827,736	1,789,800	0	0	0	92,610	37,936	0	16.3	13.6	-2.7	-50,693
3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14.4	13.0	-1.5	-28,083
4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14.4	13.0	-1.5	-28,083
5	1,917,480	1,837,806	1,822,480	0	0	0	70,000	15,326	25,000	14.4	13.0	-1.5	-28,083
6	1,904,980	1,842,480	1,822,480	20,000	0	0	50,000	0	12,500	13.4	13.0	-0.4	-8,083
7	2,309,421	1,842,644	1,387,310	140,990	462,390	189,018	180,000	125,326	138,731	26.1	8.1	-18.0	-390,888
8	2,850,185	1,856,516	1,320,390	462,090	0	0	128,710	74,036	938,995	16.4	11.9	-4.5	-86,793
9	1,929,000	1,874,326	1,829,000	0	0	0	100,000	45,326	0	13.8	10.8	-3.0	-58,083
10	1,712,430	1,638,018	1,595,760	0	0	0	90,000	42,258	26,670	13.9	10.7	-3.2	-53,398
11	1,967,480	1,887,806	1,822,480	50,000	0	0	70,000	15,326	25,000	11.5	10.1	-1.4	-28,083
12	2,019,980	1,897,806	1,822,480	0	0	0	130,000	75,326	67,500	14.0	9.5	-4.5	-88,083
13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13.7	9.2	-4.5	-88,083
14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13.7	9.2	-4.5	-88,083
15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13.7	9.2	-4.5	-88,083
16	2,057,708	1,903,034	1,827,708	0	0	0	130,000	75,326	100,000	13.7	9.2	-4.5	-88,083
17	2,029,147	1,907,806	1,822,480	0	0	0	140,000	85,326	66,667	13.9	8.9	-5.0	-98,083
18	2,029,147	1,907,806	1,822,480	0	0	0	140,000	85,326	66,667	13.9	8.9	-5.0	-98,083
19	2,034,667	1,913,326	1,828,000	0	0	0	140,000	85,326	66,667	13.6	8.6	-5.0	-98,08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인상 삭감 효과

20	1,979,147	1,922,480	1,822,480	100,000	0	0	50,000	0	6667	8.8	8.4	-0.4	-8,083
21	1,735,217	1,593,293	1,508,550	0	0	0	130,000	84,743	96,667	13.8	8.0	-5.8	-95,303
22	1,735,227	1,593,303	1,508,560	0	0	0	130,000	84,743	96,667	13.8	8.0	-5.8	-95,303
23	1,715,135	1,602,950	1,518,468	0	0	0	130,000	84,482	66,667	13.7	8.0	-5.8	-95,103
24	1,715,135	1,602,950	1,518,468	0	0	0	130,000	84,482	66,667	13.7	8.0	-5.8	-95,103
25	2,063,107	1,941,766	1,866,440	0	0	0	130,000	75,326	66,667	11.5	7.1	-4.4	-88,083
26	1,775,135	1,632,950	1,518,468	30,000	0	0	130,000	84,482	96,667	11.7	6.0	-5.7	-95,103
27	1,775,135	1,632,950	1,518,468	30,000	0	0	130,000	84,482	96,667	11.7	6.0	-5.7	-95,103
28	1,775,135	1,632,950	1,518,468	30,000	0	0	130,000	84,482	96,667	11.7	6.0	-5.7	-95,103
29	2,595,680	1,968,556	1,477,350	385,880	0	0	160,000	105,326	572,450	11.5	5.7	-5.8	-118,083
30	2,127,708	1,973,034	1,827,708	70,000	0	0	130,000	75,326	100,000	9.8	5.4	-4.3	-88,083
31	2,032,170	1,977,496	1,822,480	89,690	0	0	120,000	65,326	0	9.0	5.2	-3.8	-78,083
32	2,668,849	1,997,806	1,822,480	50,000	0	0	180,000	125,326	616,369	10.9	4.2	-6.7	-138,083
33	2,112,510	2,007,836	1,962,510	0	0	0	100,000	45,326	50,000	6.5	3.6	-2.8	-58,083
34	2,132,510	2,027,836	1,962,510	0	0	0	120,000	65,326	50,000	6.4	2.7	-3.7	-78,083
35	2,191,190	2,027,836	1,962,510	0	0	0	120,000	65,326	108,680	6.4	2.7	-3.7	-78,083
평균	2,018,407	1,840,941	1,729,047	42,676	13,211	5,401	116,181	63,817	117,292	13.0	8.6	-4.3	-83,054

주 1) 기존 산입범위 및 현행 산입범위 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에서 기타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2) 기존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3) 현행 산입범위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 (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1)

3)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10% 인상 시,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 대상

5) 삭감 인상률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인상률과 현행 산입범위 기준 임금인상률 간 격차를 의미함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